

규제연구 제11권 제1호 2002

전자상거래와 국제무역질서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본 논문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인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이를 관장할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논의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로는 시장접근기회의 확대, 경쟁과 불확실성의 증대, 기업연대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로는 조세와 관세체계, 법체계, 경쟁정책, 소규모 무역참여자, 정보내용규제, 표준화, 지적재산권, 정보망구축에 따른 국제적 비용분담 등 다양한 분야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나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각종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비자보호, 정보보호, 사생활보호, 지적재산권보호, 조세제도, 관세와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표준화, 경쟁정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마지막으로 국제적 논의에 대비한 우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향후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핵심주제어 : 전자상거래, 국제무역, 무역정책

I. 서론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거래의 규모가 증대되면서 국제경제 환경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우선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시장접근의 기회를 확대시켜주고 있다. 즉 공급자에 대해서는 시장을 확장시켜주며 소비자에 대해서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시장접근의 확대는 생산자에 대해서 경쟁의 심화를 의미하며 수요자에 대해서는 거래에 수반되는 불확실성도 함께 증대시킨다. 즉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생산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험요인의 증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회요인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각국은 갖가지 새로운 제도와 규율을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와 규율의 도입은 국내거래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국제거래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그 동안 국가간 거래를 관장해오던 국제무역질서도 상당한 수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수정이 필요한 분야로서는 관세, 통관절차, 세제, 소비자보호, 정보보호,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지적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분야에서 전자상거래를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확립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준비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제Ⅱ장에서는 우선 네트워크 경제의 확산이 국제무역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제Ⅲ장에서는 전자상거래가 기존의 무역질서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기존의 무역질서에서 수용할 때 야기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제Ⅳ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단체 그리고 국제기구들의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제Ⅴ장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에 대응한 국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우리 기업과 정부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결론 및 시사점이 제시되고 있다.

Ⅱ.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무역환경의 변화

1. 시장접근 기회의 확대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국제무역환경에 미치는 변화 중 가장 먼저 언급될 수 있는 것은 시장접근 기회의 확대이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국제무역의 자연적 장벽(Natural Barrier)을 완화시킴으로써 거래비용의 획기적 감소를 불러왔다. 이에 따라 전세계의 생산자와 수요자는 거리나 시차상의 제약에 상관없이 직접연결이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는 수요자에게 선택의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자신의 수요에 맞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생산자에게는 경쟁력 여하에 따라서 시장이 국경을 넘어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시장범위의 확대는 지금까지 국제무역을 뒷받침해 오던 각종 국제규범과 제도적 장치에 일대 변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1) 관세와 세제의 문제

국경을 넘어선 상품의 거래에는 전통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상품의 국경간 이동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관세부과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자상거래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온라인을 통해 전달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밖에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 상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가 그대로 부과되고 있다.¹⁾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원활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관세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며 그밖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존 Off-Line 기업과

1)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신문보도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브라이튼에 사는 밀 포드씨는 CD-Rom 구입을 위해 미국의 유명한 온라인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에 110달러를 지불할 때, 그 물건을 런던의 히드로 공항으로부터 자기 집까지 가져오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는 관세, 보관료, 배달비용까지 합친 159달러를 요구하는 전화를 배달업체로부터 받았다.” *Financial Times*, 2000. 2. 18.

의 차별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또한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관세 및 조세 수입의 감소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

(2) 법 체제와 제도의 문제

전자상거래에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서로 다른 경우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이 같은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전자상거래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 비교적 수월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어느 국가의 법과 제도를 우선해야 할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거래가 제3국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에 대해 구매자 국가의 법·제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판매자 국가의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개진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사전계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규모가 커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집단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결정이 내려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자계약과 서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법과 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거래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향후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도 중요한 논의대상이다. 즉 인터넷 사기와 해킹 등 범죄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체제의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3) 소규모 무역참여자에 대한 문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지금까지 무역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없었던 소규모 기업과 개인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무역체제는 이들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기존의 무역체제는 일정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춘 무역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량제한Quota을 통한 무역규제인데 이 경우 대부분 과거의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향후 수입물량을 설정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신규참여자에게는 불리한 작용을 한다. 물론 이러한 교역제한 조치들이 많이 제거되고 있고 앞으로도

논의가 계속되겠지만 그 진행속도가 느려 전자상거래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의 무역체제뿐만 아니라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도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과 노동기준에 관한 문제는 전자상거래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각종 NGO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이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²⁾ 그러나 이러한 노동 및 환경기준의 일률적 적용은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의 무역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새로운 무역체제의 확립은 소규모 무역 참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을 염두에 두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4) 정보내용에 관한 문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그 내용물에 대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각국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방안이 논의되고 마련되고 있다. 현재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외설정보의 유통이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청소년에 대한 음란외설정보의 전달을 불법화시키는 등의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사법적 공조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 문화적인 차이로 국가마다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을 규정하는 연령기준이 국가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 대한 정보내용에 있어서도 어느 국가에서는 허용되는 범위가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³⁾ 따라서 이러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전달되었을 경우 국제적인 사법적 공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란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문제가 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밖에 정치체제나 종교의 차이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기술적으로 국가마다 접속내용의 차별을 둘 수

2) 특히,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의 WTO 각료회의나 2000년 체코 프라하에서의 IMF 총회에서 보았듯이 자본주의에 입각한 무역자유화와 세계화를 선진국에 의한 후진국의 수탈 또는 자본가들에 의한 노동자 억압 등으로 간주하여 극렬히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어지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노동 및 환경에 대한 국가간 기준의 차이를 조화시키는 방안은 향후 국제무역질서의 확립에 있어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3) 예를 들어 성인영화의 등급판정에 있어서 미국 등 서구국가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상영이 허용된 경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2. 경쟁의 심화와 불확실성의 증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기업활동의 영역이 넓어지고 시장규모가 확대됨으로써 기업의 성장가능성이 무한해졌지만 한편으로는 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생존 자체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한 시장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데 있다. 즉 앞으로 시장환경의 변화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면 이에 맞추어 기업의 생존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표준화 문제

전자상거래는 네트워크상의 정보교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 호환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각국은 웹 언어, 문서, 지불, 보안, 인증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각종 표준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자국의 표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국의 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선정되면 그만큼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가간 경쟁과 더불어 정보기술과 관련된 기업간 표준화 경쟁도 점차 격화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한 정보기술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일지라도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기술들이 경쟁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선행기술이라도 시장상황의 전개에 따라서는 후발기술에 자리를 넘겨주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화 경쟁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민간자율의 표준화 채택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규모가 큰 기업집단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입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영향력이 큰 선진국의 기업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2) 지적재산권의 문제

네트워크상에서 전달되는 정보는 복제가 비교적 용이하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 기업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일지라도 경쟁자에 의해 쉽게 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초기의 투자기업은 운영이익은 고사하고 개발비용도 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증대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기업들은 나름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6년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는 「저작권조약」과 「실연·음반조약」을 채택하여 일부 유형에만 적용되던 저작권을 모든 유형의 저작물에 확대되도록 하였다. 아직까지는 동 조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많지 않은 편이지만 앞으로 그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밖에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으나 그 진행속도는 매우 느린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전개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손실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네트워크상에서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에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는 소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선착순에 따라 도메인 네임이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유명상표에 대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도메인 네임을 선점하여 기존의 상표권자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3) 기업간 제휴에 따른 문제

시장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경영에 따른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기업은 이러한 위험요인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다른 기업들과의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표준화 경쟁이나 지적재산권의 방어에 있어서도 기업들은 단독으로 위험을 부담하기보다는 서로 공동의 전선을 구축하여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체 연합은 동종업체간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결합을 통해 일어나며 과거의 기업간 경쟁은 기업연합간의 경쟁으로 형태가 바뀌어 가고 있다. 기업들의 사업영역이 어느 정도 구별되었던 과거의 시장과는 달리 네트워크 경제의 확산으로

통합된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구매자의 다양한 수요를 하나의 기업이 단독으로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관련된 업종의 기업들간에 효율적인 연대를 구축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간의 제휴가 확대됨에 따라 신규진입기업이나 중소기업체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기업간 제휴에 대한 독점여부 및 공정거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Ⅲ. 기존의 무역질서와 전자상거래⁴⁾

이번 장에서는 달라진 무역환경이 기존의 무역질서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제무역환경을 다루는 틀은 크게 다자간 체제와 양자간 체제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양자간 체제에서 전자상거래를 다루는 단계에 아직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주로 다자간 체제인 WTO협정⁵⁾상에서 전자상거래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전자상거래의 지위

기존의 WTO협정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전자상거래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상품의 교역으로 간주한다면 GATT⁶⁾체제에서 이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를 서비스 교역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이 문제를 GATS⁷⁾체제에서 다루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GATT나 GATS체제가 아닌 제3의 협정을 체결하여 전자상거래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

4) 이번 장의 내용은 이미 WTO의 전자상거래 보고서가 출간됨으로써 국내의 여러 관련자료에 내용이 소개되고 있으나 보고서 구성상의 필요성과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필자 나름대로 분석하고 재정리하여 간단하게 기술한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 WTO, 1998을 참조하기 바람.

5)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쉬 선언을 통해 전세계 124개국 정부와 EC는 UR의 종결과 WTO의 1995년 1월 출범을 결의하였음.

6)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7)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한 국제적인 논의는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WTO의 보고서는 기존의 GATT 또는 GATS체제에서 전자상거래를 다룰 경우 몇 가지 접근방식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우선 GATT는 외국상품이 일단 국경을 통과하면 국내상품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GATS는 산업별로 서로 다른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한 양허안(Sectoral Commitment)에 기초하고 있다. 두 번째로 GATT에서는 수량제한을 통한 시장접근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GATS에서는 시장접근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세 번째, GATT는 관세 또는 일반적인 세제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으나 GATS에서는 양허안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와 관련한 논의의 여지가 별로 없다. 마지막으로 GATT에서는 국경조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GATS에서는 현지영업이나 인적자원의 이동 등 추가적인 사항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자상거래를 GATT에서 다루느냐 GATS에서 다루느냐 또는 제3의 새로운 체제에서 다루느냐에 따라 그 접근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임을 알 수 있다.

2.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48년 출범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1994년 종료한 UR에 이르기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국가간 상품이동의 장애가 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추진하였다.⁸⁾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예상하지 못했던 GATT체제 내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새롭게 출현한 상품과 무역방식에 대한 조치가 분명하지 않다. 일부 조항의 경우는 이를 전자상거래의 출현에 맞게 개정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GATT의 체계상 전자상거래를 포용하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1) 정책적 동기와 정보내용

현재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관행일 뿐 WTO의 회원국들이 이를 공식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1998년 전자상거래에 대한 현행의 무관세 조치를 전체회원국이 공식적인 조약

8) 2001년 카타르의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의제(DDA)협상은 9번째 시도이다.

의 형태로 결의할 것을 WTO 일반이사회에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국가마다 다르고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비단 관세뿐만 아니라 정부재정, 시장보호, 규제 등의 사항에 있어 각국은 서로 다른 정책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물론 각국은 자신의 정책적 동기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를 서로 조화시켜 국제적인 협약을 맺어 왔다. 그동안 관세 등 국제교역에 관한 정부의 개입은 전달물의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책적 동기를 반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경우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재정적인 동기에서 조세를 부과할 경우 지금까지는 거래되는 물품의 가치를 파악하여 과세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경우 거래되는 정보의 가치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율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보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정책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간에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힘들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GATT 규정들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2) 전자상거래의 상품분류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진다고 해도 현재의 GATT 규정은 여전히 불충분하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 중 일부분은 물리적인 상품으로의 전환이 용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서적을 주문하여 그 내용을 On-Line상에서 전달받았다면 이를 종이에 인쇄하여 볼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전달된 정보를 책이라는 일반적인 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앞서서 논의한 정책적 동기에 관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전달된 정보가 물리적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해도 기존의 상품분류체계에 의해 다루어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의사의 처방이 전달된다고 할 때 이를 상품으로서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의 국제무역 상품분류에서 의사의 처방이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⁹⁾ 또한 인터넷상에서 전달되는 모든 정보가 물리적인 상품으로 전환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바이러스

9) 물론 의사의 처방은 서비스로 분류되어 GATS체제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내용은 후에 다루겠다.

퇴치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전달받는다면 이 프로그램은 그 순간 작동을 시작하여 물리적인 형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상품의 분류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며 따라서 GATT의 상품분류 체계는 전자상거래로 파생되는 새로운 상품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GATT 조항과 전자상거래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들은 기존의 GATT체제가 안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GATT체제 내에서 다루어지자면 그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번 절에서는 그러한 근본문제 이외에 기존의 GATT의 조항 중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해 개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GATT 1947의 제5조의 통행의 자유(Freedom of Transit)에 관한 조항이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GATT가 처음 제정될 당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의 이동을 상상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 당시 생각할 수 있었던 국경이동의 방법은 물리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GATT 제5조는 인터넷 등을 통한 On-Line 상의 통행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GATT 1947의 제7조 통관목적을 위한 가치평가(Valuation) 조항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4년의 WTO 협정에는 제7조의 적용과 관련한 협정¹⁰⁾을 통해 통관목적을 위한 가치산정에 대해 비교적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으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의 경우 정보내용의 파악이 어려우며 설령 파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정보에 대한 가치평가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과 관련하여 GATT의 제8조 수출입과 관련된 비용 및 대금(Fees and Charge) 조항도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GATT 1947의 제10조 무역규정의 공표와 집행(Publication and Administration of Trade Regulation) 조항도 전자상거래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고쳐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 별도협정으로 되어 있는 수입면허에 관한 협정(Import Licensing)과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Preshipment Inspection),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Rules of Origin), 기술적 무역장벽에 관한 협정(Technical

10) GATT 1994 VII조의 해석에 관한 협정은 모두 24개의 본 조항과 2개의 부속조항을 갖춘 별도협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Barriers to Trade 등은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기존의 조항들이 적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3.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UR을 통해 체결된 GATS는 서비스분야의 교역에 대해서 맺어진 최초의 다자간 협정이다. GATS에서는 상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의료, 여행, 레저 및 스포츠, 교통 등 11개의 주요분야에 대한 양허계획을 담고 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역의 상당부분이 이들 11개 분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기존의 GATS 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GATT와 같은 체제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아닐지 모르지만 GATS체제에서도 전자상거래를 포함하기 위해서 보다 명확하게 하여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GATS는 GATT와 달리 산업별로 시장접근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GATS 영역 안에서도 해석상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GATS 조항을 논의하자면 분야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GATS에서의 전자상거래 분류

GATT와는 달리 GATS에서는 상품을 분류하기 위한 국제적인 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UN에서는 중앙상품분류(CPC)체계를 확립하고 있는데 많은 GATS 회원국들이 이를 인용하여 서비스상품의 분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 분류에서는 금융, 통신, 항공, 선박 등과 관련된 많은 서비스산업이 취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ATS에서 다루고 있는 서비스산업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분류한다면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초 인프라와 관련된 산업으로 통신과 컴퓨터 산업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산업이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는 On-Line상에서 상품전달이 가능한 산업으로서 방송, 음악, 영화 산업과 금융서비스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는 전자상거래와 보완기능을 가진 산업으로 우편, 화물, 교통서비스업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보의 전달로부터 혜택을 받는 산업으로 건설, 환경, 의료, 교육서비스 등의 다양한 산업이 해당될 수 있다. 첫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산업들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과 이에 대한 접속서비스에 관한 것들로 기존 GATS의 기본통신협정에 대한 양허안과 최

근 체결된 정보기술협정(ITA)에서 언급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분야에 해당하는 산업들도 상당부분 GATS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으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새롭게 파생되는 서비스분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심사이다. 세 번째 분류의 산업들은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상품의 물리적 이동에 관련된 것들로 GATS에서는 아직까지 시장개방에 대한 진전이 별로 없는 분야이다. 마지막 분류의 산업들에 대해서는 GATS에서 체결국들간에 시장접근에 대해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 분야이다.

(2) 서비스 인도방식과 시장접근

GATS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소재위치를 기준으로 서비스상품의 인도방식 Mode of Delivery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의 수요자가 외국의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역외공급, 국내의 수요자가 외국으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역외소비, 외국의 업체가 국내에 지사 등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영업, 서비스 인력이 직접 이동하는 자연인의 이동이다.¹¹⁾ 이 중에서 전자상거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방식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방식이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모두 서비스 공급자가 역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수요자가 GATS 체결국의 국내에 있는지 아니면 국외에 있는지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수요자의 물리적 위치가 서비스의 공급장소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GATS 규정의 해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GATS에서 각국은 위의 두 가지 방식에 따라 시장접근 Market Access 과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에 대한 시장개방 정도를 달리 양허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별로 어떤 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접근을 허용하기도 하면서 또 다른 산업에서는 많은 제한을 두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 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접근 자체를 금지시키기도 한다.

(3) 양허정도

WTO 회원국들의 GATS에 대한 양허정도를 분석해보면 회원국들이 대부분 역외공급보다는 역외소비에 대해서 보다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영토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보

11) 각각 Cross-Border Supply, Consumption Abroad, Commercial Presence, Movement of Natural Person임.

다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컴퓨터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 시장에서는 62개국이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40% 정도가 완전개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WTO의 통신협상이 완료된 당시에는¹²⁾ 기초서비스와 부가서비스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았다. 기초서비스는 음성통신이나 데이터전송과 같이 데이터 형태의 변화가 없는 실시간 통신을 뜻한다. 반면 부가서비스는 데이터의 형태나 내용의 변화를 수반하는 통신을 뜻하며 On-Line을 통한 데이터처리, 전자메일, 음성메일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현재의 GATS 통신협정이 부가서비스까지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협정체결국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초서비스 분야 중에서 50개국 정도가 데이터전송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며 약 15% 정도는 역외공급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한편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50개국 이상이 양허안을 제출했으며 이 중 약 25% 정도가 역외공급과 역외소비를 조건 없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과 교통서비스 등과 같이 전자상거래를 보완하는 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은 아직까지 시장개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편서비스는 공공독점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오직 6개국만이 우편서비스에 관한 양허안을 제출하고 있다.

IV.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대비한 국제적 논의

앞서 살펴보았듯이 1948년 출범한 GATT에 근간을 두고 있는 다자간 무역체제는 전자상거래로 인해 파생되는 새로운 상품과 무역방식을 포용하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따라서 현재 WTO와 OECD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이들 가운데 가장 진척이 앞선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요 사안별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소비자 보호

12) 1994년의 마라케쉬 선언에서는 통신분야와 관련된 협상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7년에 가서야 69개국 정부간에 최종적으로 협상이 완료되었음.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법률과 정책 그리고 관행 등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상업적 행위를 제한하여 왔다. 이와 같은 장치들은 소비자와 기업간의 관계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소비자 신뢰의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다른 종류의 상업적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신뢰는 그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네트워크를 통한 자신의 거래가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향후 발전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필수적인 소비자 신뢰의 구축을 위해 소비자 보호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OECD에서는 1999년 12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¹³⁾을 제시하였다.

(1) 일반원칙

OECD 가이드라인은 우선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다른 종류의 상업적 거래와 같은 수준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비자의 이익을 존중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기업은 자신들이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체와 소재를 숨기거나 소비자 보호기준과 이의 시행을 위한 장치를 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업적 전자메일을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하고 손쉬운 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노약자나 환자 또는 정보이해 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에게 상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함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온라인 공개

13) OECD 가이드라인은 기업과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B to C)에 관한 것이며 기업간 거래(B to B)에 관한 사항은 아님.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소비자와의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온라인상에서 밝혀야 할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기업들은 우선 접근이 용이한 방법으로 자신의 법적 명칭,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명칭, 기업의 지리적 주소, 전자메일 주소, 전화번호, 업종, 관련 면허 등의 내용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소비자와의 신속하고 용이하며 효과적인 연락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적합하고 효율적인 해결방법과 법적 절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소재지와 관할 행정당국에 대한 정보를 밝혀야 한다. 만약에 기업이 자신이 속한 자율기구, 협회, 분쟁해결기구, 또는 인증기관에 대한 가입 여부를 공표할 때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은 또한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근이 용이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거래정보

OECD 가이드라인은 또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은 계약조건과 거래비용 등을 소상히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거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선 기업은 거래조건과 관련된 명확한 정보의 전문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거래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총비용을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기업에 의해 부과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그밖에 거래에 수반되는 정례적인 비용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거래비용과 관련된 정보는 거래에 적용되는 화폐단위로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배달 및 지불방법과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부모의 동의나 지리적 또는 시간적 제약 등 판매계약조건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밖에 안전 및 보건상의 경고를 포함하여 사용상의 적절한 방법을 알려야 하며 사후서비스에 관한 사항도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래의 취소와 환불조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보증내역이 제시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구매의도와 관련된 불명확성을 피하기 위해 구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앞서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착오가 있다면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거래와 관련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는 거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언제나라도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사용이 용이하고 안전한 지불방법을 제공받아야 하며 지불방법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전

달받아야 한다.

(4) 분쟁해결 및 보상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기업과 소비자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현재 나름대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출현은 이와 같은 체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현행 법체계를 개선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원칙적인 내용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즉 OECD는 기존의 체계를 개선함에 있어 각국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공정한 틀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소비자들은 다른 형태의 국제거래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정도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의 부담이 없는 공정하고 시의 적절한 분쟁해결과 보상에 관한 대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소비자대표,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투명한 자율장치와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 사생활 보호

OECD에서는 1980년 채택된 사생활 보호와 국경간 개인정보의 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¹⁴⁾과 1985년 채택된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선언¹⁵⁾에 기초하여 사생활 보호문제를 글로벌 네트워크상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8년 글로벌 네트워크상에서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OECD 각료선언¹⁶⁾을 발표한 바 있다. 동 선언에서 OECD 회원국의 각료들은 네트워크상에서의 중요한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의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다.

(1) 일반사항

14) OECD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 of Personal Data.

15) Declaration on Transborder Data Flows.

16) OECD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on Global Networks.

개인정보는 신분이 드러나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관계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며 가이드라인은 공공이나 민간에서 처리되는 방식이나 사용되는 상황 또는 정보의 속성 때문에 사생활이나 개인의 자유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개인정보에 적용된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자유를 속박할 위험이 분명하게 없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국한해서만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주권, 안보,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예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나 예외적용에 대한 일반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사생활 보호와 개인자유 보호를 위한 다른 장치에 의해 보완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국내적용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한이 있어야 하고 정보의 수집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정보는 그들이 사용되는 목적에 합당해야 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정보수집의 목적은 최소한 정보수집이 집행되기 이전에 명시되어야 하고 정보의 사용은 그 목적의 달성에 국한되며 목적이 바뀔 경우에는 그때마다 공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는 정보내용에 대한 동의나 법적인 권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거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개인정보는 손실 또는 허가받지 않은 접근, 파괴, 사용, 변형, 그리고 공개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합당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진전, 관행, 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에 관한 정보유무에 관해서도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를 합당한 시간 내에 과도한 비용 없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자신에 관련된 정보를 거부당할 경우 충분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자신에 관한 정보의 삭제, 수정, 보완, 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는 이상에서 언급한 원칙의 적용을 위한 조치를 따르는 데 있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3) 국제적용의 원칙

OECD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에서의 개인정보의 국내처리와 재수출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경을 넘어선 개인정보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또한 상대회원국이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들에 의한 정보 재수출이 국내의 사생활 보호입법을 제약하지 않는 한 국경을 넘어선 개인정보의 이동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회원국들은 개인정보의 속성에 비추어 특별한 필요가 있거나 상대회원국이 동일한 수준의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특정분류의 개인정보에 대한 국경간 이동을 제한할 수는 있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자유를 명목으로 그 목적을 넘는 수준으로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을 제한하는 법이나 정책 또는 관행을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4) 국내정책과 국제협력

OECD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하여 각국은 법적, 행정적 절차나 기구를 만들어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사생활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적절한 국내법을 채택하며 행동규약과 같은 형태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의 자율방안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원칙에 의거하여 성립된 조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적절한 제재를 가하고 처벌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내용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이 없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국제협력에 있어서는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세밀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과 사생활 및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는 간편하여야 하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다른 회원국과의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회원국들은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위한 절차와 절차상 또는 조사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지적재산권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할 당시 교역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약(TRIPS)¹⁷⁾이 체결되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적 규범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1996년 국제지적재산권기구

17)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PO)에서 채택된 저작권조약과 실연·음반조약¹⁸⁾에서는 인터넷이나 그 밖의 통신망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국제적인 장치가 추가적으로 확립되었다. 그밖에 상표권과 도메인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1997년 제네바에서 양해서(gTDL-MoU)¹⁹⁾가 채택되었으며 현재 효과적인 도메인명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비롯하여 TRIPS와 WIPO조약의 내용과 추가적인 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TRIPS조약

1995년 WTO조약의 부속조약(Annex 1C)으로 TRIPS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는 다자간 협력체제의 일부가 되었다. TRIPS조약은 WTO의 회원국들이 베른협약에 관한 1971년의 파리법²⁰⁾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TRIPS조약은 보다 효과적인 집행, 감시, 분쟁해결장치를 가지고 베른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TRIPS조약에서 다루는 주요사안들은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디자인, 특허, 집적회로의 배치도안, 교역기밀과 검사결과 등이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TRIPS조약은 국별로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담고 있으며 보호대상에 대한 인정사항, 예외사항, 최소보호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TRIPS조약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집행절차와 위반시의 처벌 및 배상절차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에는 민사 및 행정절차와 보상절차, 잠정조치, 국경에서의 특별절차, 형사절차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해결절차는 WTO의 분쟁해결기구에 따른 절차를 따르기로 하고 있다. 그런데 TRIPS조약이 기초하고 있는 베른협약은 충분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확산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WIPO 협정

현재 175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1996년 채택된 저작권협정과 공연 및 음향협정은 각각 2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18) WIPO Copyright Treaty와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9)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Generic Top-Level Domain Name Space of the Internet Domain Name System.

20) Paris Act of 1971 of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있다. 이들은 각각 1886년의 베른협약과 1961년의 로마협약²¹⁾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들 기존협약의 내용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고 있다. 이들 협정은 기존의 지적재산권을 인터넷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즉 창작물이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해 일반에 유포되고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까지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편집 및 그와 유사한 지적창조행위에 대해서도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권리의 인정은 최소한 50년으로 하며 공연물이 다른 매체에 기록된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계산하여 최소 50년으로 한다. 그리고 이들 협정은 지적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기술적 방법을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이 기술을 우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WIPO협정에서는 또한 전자적 권리에 대한 관리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3) 도메인네임

도메인네임이란 인터넷의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의 주소를 뜻한다. 그런데 사용자의 손쉬운 인식을 위해서 개발된 도메인네임은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상표권자와 도메인네임 등록자간에 분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따라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는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인터넷 네임과 주소의 관리에 관한 최종보고서²²⁾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관리하는 ICANN²³⁾에 대해 도메인네임과 기존의 지적재산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으며 새로운 인터넷 도메인네임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도메인네임 상위분류체제(gTDL)²⁴⁾의 표준등록절차를 도메인네임과 지적재산권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도록 개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도메인 네임의 소유자에 대한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접속정보와 소재파악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접속정보는 지적재산권의 소유자가 자신의

21)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Rome, 1961.

22) The Management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es : Intellectual Property Issues-Final Report of the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 1999.

23)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24) generic top-level domains.

권리를 행사하는 기초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만약에 접속정보가 믿을 만하지 않다면 제3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등록기관에 통보할 권리가 있다. 또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기관은 해당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WIPO의 보고서에서는 ICANN으로 하여금 도메인네임 상위분류체제와 관련하여 단일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해결절차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기존의 상표권에 위배되는 도메인네임 등록의 남용과 관련된 사이버스quatting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메인네임의 등록자들은 이러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등록기관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절차는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비용이 많이 들어서는 안되고 대부분 온라인에서 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한편 유명하거나 널리 알려져 있어 사이버스quatting의 주요 대상이 되는 표상은 상위분류에 의한 도메인네임 상위분류체제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4. 조 세

1998년 10월 열린 OECD의 오타와 각료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했으며 재정문제위원회(CFA)²⁵⁾가 제출한 보고서²⁶⁾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국제적 논의를 벌이기로 하였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의 기본원칙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들 원칙이 기존세제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술이 조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는 한편 기본원칙의 적용에 있어 기업을 비롯한 조세납부 집단 및 비OECD 회원국과의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오타와 각료회의에서는 조세와 관세를 구별해서 취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여기서는 현재 전자상거래의 조세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가장 많이 진척되고 있는 OECD에서의 진행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25) Committee on Fiscal Affairs.

26) Taxation Framework Condition.

(1) 조세의 기본원칙

OECD에서는 기존 조세의 기본원칙이 전자상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조세의 기본원칙은 중립성, 효율성, 명확 및 단순성, 유효성 및 공정성, 유연성의 다섯 가지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중립성은 전자상거래 여러 유형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기존거래 사이에 과세가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효율성이란 납세자비용과 행정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명확 및 단순성은 조세법 등이 명확하고 단순하여 이해하기 쉬워야 함을 의미한다. 유효성 및 공정성은 적절한 액수를 적당한 시점에 부과되게 함으로써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세의 유연성은 조세체계가 기술이나 상업적 발전에 맞추어 변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OECD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전혀 새로운 조세체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체계를 수정하여 이상의 다섯 가지 원칙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2) 소비세

오타와 각료회의 이후 OECD에는 다섯 개의 자문그룹(TAG)²⁷⁾이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세 TAG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서는 교역에 대한 소비세는 소비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급된 물품이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행위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되어야 한다. 소비세의 적용에 있어 디지털 제품의 공급은 일반상품의 공급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역내기업이나 다른 단체가 역외의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나 무형의 자산을 획득할 경우 각국은 자신의 세원과 국내공급자의 경쟁력을 보호할 수 있는 역과세나 자율과세 또는 그밖의 과세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각국은 WCO²⁸⁾와 공동으로 운송 및 다른 관련집단과의 협의를 거쳐 물리적 상품의 수입에 대한 적절한 과세체제를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체제는 조세징수와 상품의 전달을 과도하게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영구적 소재

27) 다섯 개의 Technical Advisory Group은 Technology, Professional Data Access, Consumption Taxes, Business profits, Income Characterization으로 이루어져 있음.

28) World Customs Organization.

기업이윤 TAG에서는 현행 조세조약이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기업과세에 대해 적용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또한 대체입법을 위한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관심이 가는 분야는 OECD의 모범조세협약²⁹⁾ 제5조의 기업의 영구적 소재Permanent Establishment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은 외국기업이 자국 내에 영구적 소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자국내 영업이익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웹사이트 등에서의 기업존재가 그 기업의 실질적인 소재를 의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이윤 TAG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컴퓨터 장비의 위치가 영구적 소재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컴퓨터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데이터나 소프트웨어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웹사이트가 위치한 서버의 운영자와 그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을 벌이는 기업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³⁰⁾ 자동장치의 운영은 원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비를 관리하는 인력이 특정국가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영구적 소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서버는 이동이 가능하므로 컴퓨터장비의 위치가 영구적 소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장비가 어떤 위치에 충분한 기간동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³¹⁾

5. 기타사항

이상에서는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와 진전이 이루어진 사안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사생활 보호, 지적재산권, 조세 등의 문제를 언급하였으나 이밖에도 통관절차, 정부조달, 표준화, 경쟁정책 등에 관한 사항들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아직 이들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간단하게 기술하

29) OECD Model Tax Convention.

30) 예를 들어, 웹사이트들은 대부분 인터넷서비스업체(ISP)에 의해 운영되며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1) 나머지 자문그룹의 활동을 살펴보면, 우선 기술 TAG에서는 조세행정과 관련된 조항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납세자 정보관리, 조세징수 등의 국가별 조치와 국제적 협조에 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전자서명의 검증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 전 문평가(PDA) TAG에서는 각국의 조세징수 당국을 도와 국제적으로 호환될 수 있는 납세 관련 정보수집 및 관리체계의 요구조건과 조세징수 체계개발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특성 TAG에서는 전자상거래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소득형태를 다루고 있으며 현재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로열티의 문제에 관해서 검토하고 있다.

면 다음과 같다.

(1) 통관절차

많은 국가들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EDI체계³²⁾를 도입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접속이 정부기관과 소수의 민간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개방적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모든 제조업자와 기업 그리고 일반대중이 접속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개방시스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국의 통관자료 양식을 UN/EDIFACT에 맞추어 통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 정부조달

현재 26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서는 새로운 정보기술이 도입될 때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회원국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협의회에서는 이미 GPA의 개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여기서는 전자조달의 방법 이외에 기존의 문서를 통한 조달절차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또한 전자정보전달기술로 인한 절차기간의 단축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그밖에 전자서명이나 전자영수증으로 하드카피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검토되고 있다.

32)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3) 표준화

UN산하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계약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모범안에 대한 작업을 벌인 바 있다. 동 모범안에는 전자전송을 통한 계약을 인증하는 기본적인 규칙과 규범을 담고 있으며 전자계약의 양식과 계약의 이행을 관리하는 기본법칙을 정하고 있다. 모범안에서는 또한 원본과 전자문서의 유효성의 관계,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상업적 수용성, 법정과 중재과정에서의 컴퓨터증거물 채택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미국정부는 UNCITRAL의 모범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계약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계약관계를 맺는 데 있어 자유로워야 하고 규칙은 기술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하며 향후 기술발전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향상된 기술의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해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칙의 개정이나 제정은 신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아직 On-Line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지 않고 있는 기존산업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적 표준의 채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적인 논의를 위한 뚜렷한 움직임이 없으나 미국정부는 국제표준기구(ISO), 국제전자기술위원회(IEC), 국제통신연합(ITU) 등과 협의를 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표준의 채택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4) 경쟁정책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경쟁정책의 논의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형편이다. 다만 최근 미국의 공정거래 당국에 의해 BtoB 업체들에 의한 독점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를 비롯한 대규모 업체들이 구축하려고 하는 공동구매 사이트에 의한 경쟁자 배제, 가격담합 등의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OECD의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³³⁾에서는 정보기술 시장에서의 선진국기업들의 기술담합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경쟁정책에 대해서는 각국이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아직은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경쟁정책의 논의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다.

33) OECD Conference on Trade and Competition, Paris, June 1999.

V. 국내현황

이번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국제적 논의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도메인 이름등록규정 등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국내에서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틀은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법·제도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위 규정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세부규정이 미비한 형편이다. 물론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파악하기에도 힘들며 OECD 등에서의 국제적인 논의도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규정의 마련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1. 기존 법·제도와 문제점

(1)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에는 전자문서, 전자거래의 안전, 전자거래의 촉진, 소비자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의 법적 지위와 인증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은 언급한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시행을 위한 세칙은 아직 마련된 것이 없는 형편이다. 특히, 이들 법령은 국내에서의 전자거래만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어서 앞으로 전자거래와 관련한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형편이다. 물론 현재 전자거래의 지위, 안전,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에 대한 국제협약이 체결되겠지만 그에 앞서 이를 염두에 둔 국내법·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2)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2000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시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앞서 논의한 OECD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적 충실히 담고 있다. 즉 동 지침에는 사업자 정보, 거래정보, 신뢰성확보, 대금지급, 인도, 소비자 불만처리,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국내법과 국제법 사이의 상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OECD의 논의가 완결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전개방향에 따라서는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앞으로 OECD 등의 논의가 전개되는 것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OECD 회원국으로서의 활발한 의견개진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저작권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과 도메인이름 등록규정

저작권법은 1995년 WTO의 TRIPS조약과 WIPO조약에 의한 내용에 맞추어 개정이 되었다. 즉 TRIPS에서 규정한 효과적인 집행, 감시, 분쟁해결장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해서는 WIPO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또한 1999년 1월 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선 및 유선 전송에 관한 내용을 담아 WIPO조약의 내용 중 기존 저작권법에서 제외된 내용을 보완하여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두 가지의 법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국제조약을 무리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외국인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인정에 대해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TRIPS나 WIPO 등에서 분쟁해결절차 등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국제적인 분쟁의 발생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한편 도메인이름 등록규정은 국제적인 기구인 ICANN의 위임을 받아 한국인터넷센터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메인네임 상위분류체계에서의 사이버스캠팅의 문제를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한글 도메인네임의 부과와 관련한 문제 등 국제기구와의 관계가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2. 미결사항

앞에서 언급한 기존 법·제도의 현황에서 언급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에 대한 국가간 양해가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로 국

내체제가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문제 등 아직 국제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내제도정비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개별 사안별로 보면 국내의 법·제도의 체계가 국제적인 기준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사안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조세 중립성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에 대해 OECD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본원칙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조세의 중립성에 관한 것이다. 즉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거래와 비교하여 열등하거나 우월한 조세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육성한다는 명목 아래 이와 관련된 사업에 조세상의 특혜를 주려고 하고 있어 OECD의 조세중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투자에 대해 3~5%의 조세특혜를 주고자 하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또한 사이버몰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해 일정한 수준까지 소득세를 면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7년간 세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마지막의 규정은 전자상거래와 기존거래 사이의 불평등한 조세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역차별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육성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OECD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왜곡된 조세구조는 왜곡된 산업구조를 불러오며 이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가져오기보다는 편중된 자원배분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2) 경쟁정책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은 서로 다른 경쟁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나름대로의 공정거래법을 가지고 국내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국내기업과 국제기업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엄두에 두고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은 자칫 국내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와 장치에 대해 국내기업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더욱 확산

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는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경쟁정책의 국제적인 협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우선 국내 경쟁정책의 역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국내기업이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쟁정책의 확립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우리는 이상에서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인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기존의 국제무역질서가 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환경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논의의 동향을 알아보고 이에 비교한 우리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안들이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법과 제도가 아직까지 미완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무역환경의 변화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경제통합의 가속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인터넷의 확산으로 시간과 거리 등의 자연장벽이 사라짐으로써 국경은 더욱 무의미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제까지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속도로 시장의 통합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제무역질서는 비교적 더디게 일어나고 있던 시장통합을 앞당기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이제는 오히려 기존의 국제무역질서가 네트워크의 확산을 통한 무서운 속도의 시장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앞으로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세계시장의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따라서 국제무역질서도 재편될 것이 분명하다. 이때 우리 기업과 정부가 취해야 할 대외전략은 보호와 방어가 아니라 개방을 통한 효율성의 증대와 국제경쟁력의 강화일 것이다. 기업은 구조조정을 서둘러 그동안 내부에 존재하여 왔던 각종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세계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의 법·제도·관행에 남아 있는 각종의 반경쟁적 요소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처간의 업무조정과 이견조율 등을 통해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정부의 통일된 입장정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입장을 토대로 국제무역질서의 재편작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네트워크 경제의 확산과 세계경제통합의 혜택이 우리 국민과 기업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나 기업은 국제화를 부르짖으며 외형적으로는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으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구호에 그친 세계화를 가지고는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외면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K C I

참 고 문 헌

류정우, 「전자상거래 통상문제의 구조」, 『정보통신정책 DB』,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산업자원부, 한국전자거래협회, 『전자상거래 백서 2000』, 2000.

Coppel, Jonathan, “E-Commerce : Impact and Policy Challenges,”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252, OECD, June, 2000.

Goldstein, Andrea and David O'Connor, “E-Commerce for Development : Prospects and Policy Issues,” <http://www.oecd.org/dev>

Johansson, Börje, Charlie Karlsson, and Lars Westin Eds., *Patterns of a Network Economy*,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1994.

Machlis, Avi, “Cross-border regulations create hurdle for cybeshoppers,” *Financial Times*, Feb, 28, 2000.

NIST,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Draft #9, Dec, 1996, http://www.iitf.nist.gov/eleccomm/glo_comm.htm

OECD, “Aide-Memoire,” *OECD Conference on Trade and Competition*, Paris, June, 1999.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http://www.oecd.org/subject/e_commerce/ec_progrep.htm

OECD, “Implementing the Ottawa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Committee on Fiscal Affairs, June, 2000.

OECD,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on Global Networks,” Working Party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Ottawa, Oct, 1998.

OECD, “Progress Report on the OECD Action Plan for Electronic Commerce,” <http://www.oecd.org/dsti/sti/it/secur/prod/PRIV-EN.HTM>

OECD, “Progress Report : Taxation and Electronic Commerce,” Committee on Fiscal Affairs, http://www.oecd.org/daf/FSM/tagprogress99fsme_en.html

OECD, “Recommendation of the OECD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for Consumer

-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http://www.oecd.org/dsti/sti/it/consumer/prod/guidelines.htm>
- Whinston, Andrew B., Dale O. Stahl, and Soon-Yong Choi, *The Economics of Electronic Commerce*, Macmillan Technical Publishing, Indianapolis, Indiana, 1997.
- WIPO,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WIPO Database of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ve Texts*.
- WIPO, “WIPO Copyright Treaty,” Diplomatic Conference on Certai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Questions, Geneva, Dec., 1996.
- WIPO,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adopted by the Diplomatic Conference on Dec. 20, 1996, *WIPO Database of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ve Texts*.
- WIPO, *The Management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es : Intellectual Property Issues-Final Report on the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 April 30, 1999, <http://wipo2.wipo.int>
- WTO,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Special Studies 2*, World Trade Organization, 1998.
- WTO, “Preparation for the 1999 Ministerial Conference, Electronic Conference-Communication from Japan,” WT/GC/W/253, July, 1999.
- WTO, *The Result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The Legal Text*, World Trade Organization, 1994.
- WTO,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Information provided to the General Council,” G/C/W/158, July, 1999.
- WTO,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Submission by the United States,” WT/GC/16, Feb, 1999.

E-Commerce and World Economic Order

Kwon, Youngmin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due to the spread of electronic commerce. The main changes are enlargements of market access, intensification of business competition and increasing uncertainty, and strengthening competition and alliances among businesses. As a result, there might arise numerous problems involving tax and tariff system, legal system, small trade participants, and contents of information. Standardization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st sharing in connecting information infrastructure could also be areas of possible conflicts. Compared to these challenges, the legal framework for the international trade is not adequate or has not developed fully yet. This study introduces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e issues of consumer protection, privacy, intellectual property, taxation, tariff and trade facilitation at the border, government procurement, standardization, and competition policy at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s study also offers recommendations for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 sectors to adapt its system toward international norm.

Key Words : Electronic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Commercial Policy.